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권고 조치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범위 확대 및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체명 표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 02-3396-5463 FAX : 02-3396-8750

E-mail : minjeong9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1]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를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관리 책임과 식별의 명확성을 위해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구분하여 업소명 및 처리업체명을 표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 1-2]

신·구조문 대비표